

제26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4. 2. 5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9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9.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
다. 상정일자 : 2024. 1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권영우 행정국장

나. 개정이유

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다자녀 감면(50%)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50%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

확대(안 별표2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2023. 11. 29.(수) ~ 12. 19.(화), 20일간

(2) 규제심사 : 심사 비대상

(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(5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(6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최미화)

- 의안번호 제2179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4년 1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,
-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다자녀 감면 50%할인을 기존 3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[별표2]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 연번 19 및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

현행		개정안	
감면대상	감면율	감면대상	감면율
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진구이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	18세 이하 자녀 2명 가구 (100분의 30)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(100분의 50)	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	100분의 50
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해당 카드 소지 이용자의 강좌 할인	100분의 5	「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	100분의 5

☞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: 2자녀 이상 가정 중,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

<체육시설 감면 현황 및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>

□ 광진구민체육센터

○ 2자녀 가구 30% 감면 현황(2023. 9. 기준)

- 감면인원 : 1,444명
- 감면총액 : 22,769천원

○ 2자녀 가족 이용료 감면 50% 확대시 세입 감소 추정액 : 연 20,238천원

□ 중곡문화체육센터

○ 2자녀 가구 30% 감면 현황(2023. 9. 기준)

- 감면인원 : 791명
- 감면총액 : 14,988천원

○ 2자녀 가족 이용료 감면 50% 확대시 세입 감소 추정액 : 연 13,323천원

-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다자녀 감면 50%할인을 기존 3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,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